

- 국민의 정부 시절 이후 해당 부서의 정치동향 파악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참여정부 들어 동 부서 자체가 폐지되었음

□ 국민의 정부, 미림팀 재건 도청 의혹

○ 의혹 요지

- 국민의 정부시절인 1999. 9.경 국정원직원 김○○이 승진 조건으로 미림팀과 동일한 활동을 3개월 가량 하였다는 의혹

○ 수사 결과

- 김○○은 천용택 원장 시절인 1999. 8.~11. 2국 지역과장의 지시로 팀원 7~8명의 T/F팀을 구성하고, 망원을 활용하여 주요 정치인의 출입장소, 여자관계 등을 들키여 3회에 걸쳐 원장·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미림팀 방식의 도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참여정부, 미림팀식 도청행위 의혹

○ 의혹 요지

- 일부 방송에서 전 미림팀원이 금년 초 과거 자신이 관리하던 한정식집 지배인과 접촉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참여정부에서도 도청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

○ 수사 결과

- 의혹 대상이 되고 있는 전 미림팀원 박○○(일명 '박전무')은 도청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동인의 주거지에 대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도청행위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정식집 지배인 및 종업원 18명 등 관련된 모든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모두 도청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이를 의심 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음

* 전 미림팀원 박○○이 2005. 1.~6.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하면서 과거 미림팀 망원으로 활동하던 한정식집 지배인 등과 접촉하여 주요 정·관계 인사의 예약상황 등을 파악하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도청과는 무관함

□ 참여정부, 국제회의 도청행위 의혹

○ 의혹 요지

- 언론에서 2003. 7.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미국 무역대표와 한국 정부대표 등의 회의 도중 테이블 밑에 붙어 있던 도청장치가 떨어졌다는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프리 존스의 발언을 근거로 참여정부의 도청 의혹 제기

○ 수사 결과

- 의혹 내용과 같이 회의 장소 탁자 밑에 녹음기(가로 10cm, 세로 15cm)가 청테이프로 고정되어 있다가 떨어진 사실이 있어 정밀 수사한 결과, 무선송신기가 아니라 일반 녹음기를 이용하였다는 점, 양면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청테이프를 사용하였다는 점 등 도청기의 종류, 부착형태 등이 기존의 안기부 등의 도청행위와는 전혀 달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인한 도청행위로 볼 수 없었음

※ 제프리 존스 前 회장도 당시 도청기 설치 상태가 아미추어 수준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도청기는 미국대사관에 인계하였다고 진술

III. 國情院·安企部 不法 電話監聽 事件

1. R2 및 CAS 이용 휴대폰 불법감청

가. R2 및 CAS 개발·운영 시스템 개요

□ R2 및 CAS 개발·사용 경위

- 1996년경부터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되면서 국정원은 '유선 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 및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 개발계획을 수립
※ 'R2' 명칭은 당시 사용되던 중계통신망의 R2 신호방식에서 유래하고, 'CAS'는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Analysis System의 약자임
- 총 1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8. 5.경 R2 감청장비 1세트, 1999. 9.경 R2 감청장비 5세트 등 총 6세트를 개발·사용하고, 총 1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9. 12.경 CAS 감청장비 20세트를 개발한 후 성능시험을 거쳐 2000. 5.경부터 사용
※ 1998년부터 국정원 등에서 휴대폰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여 왔으므로 1999. 9. R2 감청장비 5세트를 추가제작하고 1999. 12. CAS 감청장비 20세트를 제작할 당시에는 이미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음

- R2 감청장비는 감청업무를 담당하는 8국(과학보안국) 운영단 개발팀에서, CAS 감청장비는 8국 기술연구단에서 자체 개발
- ☞ R2 감청장비 및 CAS 감청장비 감청체계도 : 별첨 1, 2

□ R2 및 CAS의 원리 · 성능

- R2 감청장비는 이동통신사의 상호접속교환기와 KT의 관문교환기가 연결되어 있는 전화국에서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을 분리, 연결하여 해당 유선중계통신망을 통과하는 통화를 감청
 - 미리 입력된 전화번호(통화 시 R2 모니터에 빨간불 표시)는 물론이고, 입력되지 않은 전화번호(통화 시 R2 모니터에 파란불 표시)에 대하여도 통화 시 무작위 감청 가능
- ※ 유선전화의 실선구간은 전화번호 1개당 1개의 실선으로 구성되므로 각 회선마다 감청장비를 연결하여야 하지만 중계통신망은 여러 전화 번호의 통화가 이루어지는 통로이므로 그곳에 감청장비를 연결하면 그 구간을 통과하는 모든 통화 감청 가능
- R2 1세트당 최대 20 E1(600회선) 접속 가능하고, 동시에 64 회선까지 감청 가능(즉, 입력 600회선, 출력 64회선), 총 6세트 이므로 최대 3,600회선 접속 가능

- ※ E1 케이블 : 중계통신망의 옥외 구간은 광케이블을 사용하나 옥내 구간은 E1 케이블로 되어 있고, E1 1개는 30회선으로 구성
- CAS 감청장비는 감청대상자로부터 약 2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감청대상 휴대폰의 주파수, 기지국 위치, 단말기의 ESN(고유번호)을 알아낸 후 암호화된 음성정보를 해독하여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무선구간 통화를 감청
 - 감청대상자가 휴대폰 통화 시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 교신되는 전파 속의 ESN 정보를 CAS 감청장비가 추적하여 파악
 - 1세트에 최대 10명의 번호를 입력할 수 있으나, 동시 감청은 불가능하고, 1개의 통화 감청 후 다른 통화 감청

□ R2 및 CAS의 운용실태

- R2 감청업무는 국정원 8국 국내수집과 소속 2개팀 32명이 3교대로 매일 24시간 감청하는 상시 감청시스템으로 운용
 - 감청 후 정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통화 내용은 번문 후 내부 전송시스템을 통하여 종합처리과로 전송
 - 종합처리과는 정보가치를 판단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는 A급

첩보, 차장에게 보고하는 B급 첩보, 대공정책실 등 해당 부서로 보내는 C급 첩보로 분류

- 원장, 차장에게 보고하는 통신첩보는 따로 PC로 워드작업을 하여 A4 반쪽 크기의 용지에 제목, 통화내용, 감청시간 등을 기재한 후 출력하여 노란봉투 안에 넣어 밀봉한 상태로 전달

☞ 원장, 차장에게 보고하는 통신첩보 양식 : 별첨 3

- CAS 감청장비의 경우, 2000. 5.경 'CAS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국정원 본원 및 전국 11개 지부에 배치하여 자체 관리·사용 토록 하다가, 2000. 6. 9. 'CAS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8국 기술 연구단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사용부서에 대출
- 사용부서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8국에 사용신청하고, 8국 기술연구단 지원과는 특정모드의 경우(감청대상 휴대폰번호를 미리 입력)에는 8국장의, 임의모드의 경우(사용자가 현장에서 번호를 직접 입력)에는 국내담당 차장의, 국정원 주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대출
- 2001. 4.까지 6국, 감찰실 및 지부 등에서 통상 1개월 사용 기간으로 총 60~70회에 걸쳐 사용

나. R2 및 CAS 이용 휴대폰 불법감청 실태

□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 계획적인 대규모 불법감청

-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를 자체 개발한 후 감청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8국 국내수집과는 24시간 상시 감청시스템을 운영하고, 8국 종합운영과는 감청대상 번호를 입력하고, 8국 종합처리과는 감청결과물을 분석 · 정리하여 원장, 차장, 국장, 단장에게 보고
 - 적법감청 과정에 일부 끼워넣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조직적 · 계획적인 대규모 불법감청임
- 또한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를 자체 개발한 후 국정원 6국 및 각 지부 등에서 마약사범, 대공사범 수사 등을 위해 사용하면서 정보수집용으로도 사용
 - ▶ 국정원에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여 왔고, 휴대폰의 경우 실제로도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휴대폰 감청은 그 자체가 불법임
 - ▶ 내국인에 대한 감청은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8국 산하 유선감청팀 등에서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내국인에 대한 감청을 하고 있어 R2 수집팀에 의한 정치인 등 내국인에 대한 감청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와 무관하여 명백히 불법감청에 해당

□ 주요 전화국의 유선중계통신망을 통째로 끌어다가 무차별 감청

- R2 수집팀은 이동통신사의 상호접속교환기와 KT의 관문교환기가 연결되어 있는 광화문, 구로, 혜화, 신촌, 영등포, 영동 등 6개 주요 전화국에서 각 유선중계통신망을 통째로 끌어다가 R2 감청장비에 연결하여 해당 유선중계통신망을 통과하는 모든 통화를 감청
 - 처음에는 유선중계통신망을 통과하는 모든 불특정인들 간의 휴대폰 대 유선전화 통화를 무차별로 감청하다가, 정보가치 있는 통화내용을 효율적으로 감청하기 위하여 1999. 9.경부터 특정번호를 미리 입력한 후 감청
- 국정원은 월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광화문 등 6개 주요 전화국 전송실장에게 매월 50만원씩, 담당 실무자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면서 전화국의 협조를 얻음
- ▶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승인을 받은 특정 전화번호에 대하여 개별 실선을 연결하여 특정 통화만을 감청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유선중계통신망을 통째로 연결하여 이를 통과하는 모든 통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통제권을 넘겨받은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임

□ 1,800여명에 달하는 국내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불법 감청하고, 각종 현안 발생시마다 집중 감청

- R2 감청장비에 여·야 주요 정치인, 언론사 간부, 대기업 간부, 고위공직자, 시민·사회단체 간부, 노조 간부 등 국내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1,800여명의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미리 입력한 후 불법감청
 - ※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국내 주요인사에 대한 휴대전화번호 입력규모는 약 1,800여명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명단은 2002. 4.경 불법 감청장비 폐기시 함께 폐기되었지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해 주요인사의 명단을 상당부분 확인함
 - ※ 위 1,800여명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정치인 55%, 언론인 15%, 경제인 15%, 고위공직자 5%, 시민·사회단체 간부 5%, 노조간부 5% 가량 됨
 -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자료의 공개 및 누설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 등을 고려하여 불법감청 대상자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또한 민주당 내분, 현대그룹 위기, 대북사업, 의약분업, 금융노조 파업, 각종 게이트, 대선후보 경선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자들을 집중적으로 감청
- 고성능·대용량의 새로운 감청장비를 개발하여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믿은 휴대폰 감청
- 본건은 과거의 유선전화 감청과는 달리 새로운 고성능 불법감청장비를 개발하여 사용한 것으로, 종전의 불법감청 관행을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유형의 불법감청을 한 것임

- 과거의 유선전화 불법감청은 피해 대상자가 비교적 소수의 유력인사로 국한되었지만, R2 감청장비의 기능상 불특정 다수의 모든 국민들이 잠재적 피해자이고, 정부의 발표에 따라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대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림

□ 대외적으로 수차 불법감청, 휴대폰 감청사실을 부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내 주요인사 등 불법감청 계속

- 1998년 이래로 정치권 및 언론에서 정치인 등 감청, 휴대폰 감청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였으나, 국정원은 이를 모두 부인
 - 국정감사 시 원장, 차장 등이 '정치인 등 불법감청 없음, 휴대폰 감청 불가' 취지로 여러 번 사실과 달리 진술
 - 중앙일간지에 '휴대폰 감청 불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진실과 달리 발표
- 한편, 국정원 내부에서는 국내 주요인사 등에 대한 고급첩보 수집을 독려하면서 보안 유지
※ R2 수집팀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상부의 국내인사 등 고급첩보 수집 독려가 심하였고, 격무와 난청 등으로 고생하였다고 함

2. 구속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불법감청 책임

가. 공통사항

- R2 감청장비의 불법성을 인식
 - 원장 부임 시, 신년 업무보고 시, 8국장 부임 시 8국 업무 보고 및 R2 수집팀 순시 등을 통하여 R2 등 감청장비 현황, 감청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음
- 8국에서 생산되어 원장에게 보고된 통신첩보는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불법임을 알 수밖에 없음
 - 매일 2회 출근 직후 및 퇴근 직전에 8국 종합처리과에서 감청내용을 정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는 중요 통신첩보는 일반보고서와 달리 A4 반쪽 크기의 용지에 두 사람 간 통화 내용을 요약하고 감청시간 등을 기재한 후 감청업무를 담당하는 ‘8局’ 및 ‘親展’이라고 찍혀진 봉투 안에 넣어 밀봉 된 상태로 전달되므로 이를 받아보는 원장으로서는 통신첩보가 감청 결과물임을 알 수밖에 없음
 - 정치인 등 국내 주요인사와 관련된 통신첩보는 수사나 국가 안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불법감청임이 명백함

- 정치권과 언론에서 국내인사 불법감청, 휴대폰 감청 등 의혹을 계속 제기하였음도 아무런 확인 없이 관련 통신첩보를 계속 보고받았고, 통신첩보 수집 중단지시를 내린 적이 없음
 -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통신감청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이므로 가장 중한 책임을 져야 함
 - 국정원 8국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R2 감청장비 등을 이용하여 국내인사 등에 대한 불법감청을 경쟁적으로 계속한 이유는 최고 지휘권자인 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음
 -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국정원은 그 조직특성상 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원장이 대부분을 직접 통할함
 - 차장 이하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장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고 본건의 최고 책임자는 국정원장임
 - 불법감청을 근절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함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자신은 불법감청의 최대 피해 자임을 강조하면서 불법감청을 근절하라고 강력히 지시하였음
- ※ 대통령은 1998. 10. 22. 당무회의 시, 1999. 9. 21. 국무회의 시 등 수시로 불법 도·감청 근절 지시를 함
- 불법감청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오직 국정원장 밖에 없음에도 불법감청을 근절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에 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한 자료를 계속 보고받았음

나. 원장별 구체적 가담정도

□ 임동원 전 원장

- R2 감청장비에 감청대상 번호를 대량 입력하여 본격 사용
 - R2 감청장비 개발·사용 초기인 1999. 9.경부터 2000. 12.경까지 R2 감청장비에 정치인 등 국내인사의 휴대폰 등 1,200여개의 번호를 입력하고, 2001.에는 600여개 번호를 입력하여 불법감청
- 수시로 현안사항 관련 첨보수집을 지시하거나 관심을 표명하는 등 적극 관여
 - 2000. 12.경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이 권○○ 최고위원 퇴진을 거론하는 등 민주당 내분사태가 발생하자 관련 첨보수집 지시
 - 2000. 가을경부터 지○○이 햅볕정책 등을 비판하자 관련 통신첩보를 수시로 보고받고, 조치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
 - 2000. 6.~2001. 말경 최○○이 권○○ 등과 밀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등 물의를 빚자 관련 통신첩보를 수시로 보고받고, 최○○에 대한 내사 지시
 - 2000. 하반기~2001. 상반기 사이에 황○○ 등이 정부의 햅볕정책 등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자 이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관련 통신첩보를 수시로 보고받음

- 이○○ 등 대통령 친·인척 관련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관련 통신첩보를 수차 보고받음
 - 현대의 대북사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김○○, 이○○, 정○○ 등 현대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첩보를 수차 보고받음
 -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박○○ 통일부장관 등 통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통신첩보를 수차 보고받음
- CAS 감청장비 본격 사용
- 2000. 5.경 CAS 감청장비 개발완료 보고를 받고, 'CAS 운용 지침'을 결재한 후 그때부터 2001. 4.경까지 사용케 함
 - CAS 감청장비로 언론사 기자까지 감청한 의혹이 있고, 수사 목적 외에 정보수집용 등으로도 사용
- 임동원 원장은 대북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 정치문제 등에도 상당히 관여하였음
- 임동원 원장이 대북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국정원장이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 중 60~70%가 국내문제 이어서 국내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
 - 민주당 장○○ 의원이 공천지역 배정에 불만을 품고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다니자 김은성 차장에게 "장○○ 의원을 만나서 경고하라"고 지시

- 한나라당 이○○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하고 다니자 2000. 12. 말경 김은성 차장에게 “이○○을 만나서 순화시키라”고 지시
- 안기부 예산의 정치권 유입사건(안풍사건)과 관련하여 김은성 차장에게 “김○○, 박○○, 주○○ 의원을 만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고, YS가 심려하지 않도록 전하라”고 지시

□ 신건 전 원장

- 재임 1년간 R2 감청장비를 계속적으로 사용
 - 2001년 이후인 신건 원장 재직 시 국내 주요인사 1,800여명에 대한 전화번호 입력이 마무리되어 국내 주요인사에 대한 불법감청이 이루어짐
 - R2 및 CAS 감청장비를 폐기한 원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감청장비의 국회 보고의무가 신설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직전에 실무직원들의 수차에 걸친 건의에 따라 폐기 결정한 것으로서 자발적 폐기로 보기 곤란
- 한나라당 폭로문건 작성 당시(2002년) 국정원장임
 - 한나라당이 2002년말 폭로한 국정원 문건 39건 중 13건은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불법감청 자료로 기억하고, 나머지

문건들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국정원에서 감청한 자료로 보인다고 진술

- 국정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R2 및 CAS 감청장비 개발을 알고 있었고, 8국의 통신첩보를 보고받은 바 있음

- 국정원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98. 5.경 R2 감청장비 개발 완료 보고를 받고, 1998. 8.경 CAS 감청장비 개발계획을 보고 받는 등 휴대폰 감청장비가 제작중이거나 사용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
- 국정원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8국으로부터 국내 인사들에 대한 통신첩보를 매일 보고받는 등 이미 8국의 불법감청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

- 증거인멸 시도

- 국정원 주요간부(김은성 차장, 김○○ 국장, 꽈○○ 국장 등) 등과 검찰 수사에 대한 대책 모임을 약 3회 가량 개최하여 증거인멸 시도
- 특히, 검찰에서 불법감청 사실을 시인하고, '중요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김○○ 국장을 만나 '원장에게 정치인 등에 대한 통신감청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라'고 진술번복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 김○○ 국장 등에게 '통신첩보를 직접 보았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찰에서 조사받게 되면 불법 감청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할 것이다'고 말함

3. 유선전화 등 불법감청실태

가. 유선전화 불법감청

○ 불법감청 기간 및 장비

- 중앙정보부 창설 아래로 필요에 따라 각계인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적인 유선전화 감청이 이루어졌음
-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1993. 12.경 이후에도 유선전화 불법 감청을 계속하였으며, 1997. 말 대선 직전까지 불법감청을 한 것으로 확인됨
- 감청장비는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 감청장비와 같음

○ 감청방법

- 안기부의 과학보안국 수집과 소속 담당 직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광화문, 혜화, 영동, 신촌, 신사, 목동 등 전화국 직원에게 요구, 감청대상자의 유선전화 회선을 안기부 회선에 연결토록 하여 감청

- 매달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전화국 시험실장에게 협조 및 보안 유지 대가로 매달 10~20만원씩 지급
- 법원의 허가 없이 전화국에 유선전화 회선 연결을 요구한 건수는 매주 1~2회 정도이고, 1회에 2~3개 유선전화번호를 특정해서 연결 요구
 - ※ 매번 전화국의 협조가 필요하였으므로 보안관계 때문에 다수인을 상대로 대규모 도청이 곤란하여 불법감청을 많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요인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불법감청

○ 감청대상

-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간부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불법감청
- 불법감청 대상자 중에는 정치인이 가장 많았으며, 정치인 중에는 야당의원 보다는 여당의원을, 초선의원 보다는 중진 의원을 주로 감청
 - ※ 당시의 안기부 직원들은 검찰 조사 시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간부 등 수십 명의 도청 대상자 명단을 진술하였으나, 그 외에는 개개인을 모두 특정하여 진술하기 곤란하다면서 더 이상 이름을 진술하지 아니함
- 특정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그 대상에 대하여 집중 감청
 - ※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5, 6공 관련자들과 사건 관련 변호사 등에 대하여 불법감청

○ 주요 감청 사례

- '94년 한국통신 케이블 화재 사건 관련 통화내용
- '95년 김○○ 전 대통령의 정계복귀시,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용
- '95년 두 전직 대통령 구속시,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용
- '96년 국회의원 총선시, 관련자들의 정국에 관한 통화내용

○ 감청내용의 보고

- 종합운영과 종합처리 담당관이 수집과로부터 전송받은 감청 내용을 검토한 후 중요도에 따라 배포선을 결정
- 배포선에 따라 감청내용을 국장, 실장의 메모보좌관에게 모니터 전송하고, 메모보좌관은 모니터를 보고 중요 사항을 메모보고 형식으로 작성한 후 국장, 실장에게 보고
- 과학보안국 담당 직원이 감청내용중 중요사항을 요약·정리한 통신첩보를 밀봉된 상태에서 매일 안기부장, 차장에게 전달

○ 안기부장, 차장의 불법성 인식

- 안기부장, 차장은 과학보안국으로부터 매일 정치인 등 국내 주요인사에 대한 통신첩보를 보고받았으며,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불법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음
- 권영해 前 안기부장, 오정소 前 안기부 차장도 정치인, 언론인 등 국내인사에 대한 통신첩보를 매일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

○ 미림팀과의 업무 협조

- 과학보안국에서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하여 불법감청하던 중 주요 인사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난다는 통화내용을 감청하면 이를 대공정책실로 전송
- 대공정책실 메모보좌관은 대공정책실장의 허가를 받고 그 회동 내용을 미림팀장 등에게 전달
- 미림팀은 그 회동 장소에 미리 가서 대화불법감청 장치를 설치한 후 대화를 불법감청

나. 아날로그 휴대폰 불법감청

○ 도입 · 사용방법

- 1996년 초경 이탈리아 B.E.A.사로부터 아날로그 휴대폰 감청 장비 4세트 구입 후, 아날로그 휴대폰 서비스가 중단되는 1999. 12.경까지 사용
- 아날로그 휴대폰 감청장비는 10~15킬로그램의 007가방 크기로 휴대 사용 가능하며, 6개의 통화를 동시에 감청할 수 있음
- 감청대상 휴대폰과 동일 기지국 내에 있으면 감청이 가능하고, CAS 감청장비와는 달리 휴대폰 번호만 알면 감청 가능

○ 사용실태

- 위 기간 중 6국 및 감찰실에서 법원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약사범 수사 및 자체 감찰 명목으로 통상 1~2개월 단위로 수십 회 불법 사용
- 기술연구단에서 장비를 통합 관리하면서 필요 부서에 대출 하였으나, CAS 감청장비와는 달리 사용자가 현장에서 임의로 번호를 입력하여 감청함

4. 관련 의혹사항

가. 통신첩보 활용 여부

- 국정원장이 대공정책실 첩보 등을 비롯하여 모든 첩보를 종합하여 정제된 형태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께 주례보고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통신첩보 자체를 그대로 보고하지는 않음
 - 국정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는 대공정책실을 중심으로 수집한 첩보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그 내용이 불법감청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없었음
- ※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결재를 상신하는 국가안보 목적 '감청승인 신청서'에는 대상기관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불법감청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적법한 감청으로 대통령이 위 결재를 통해 불법감청 여부를 인식할 수도 없음

-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 등이 통신첩보를 정치권 등 외부에 유출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함
 - 김은성 전 차장이 통신첩보 및 대공정책실 첩보 등을 종합하여 파악한 내용 중 일부를 정치권에 구두로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통신첩보 자체를 유출한 사실은 없음
 - 일부 언론에서 김은성 전 차장이 권○○ 전 의원에게 정보보고 등을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김은성과 권○○ 전 의원은 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사이가 그다지 원만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됨

나. 현 정부에서의 불법 전화 감청 여부

□ 수사결과

- 2002. 4. 휴대폰 감청장비 폐기 이후 현재까지 휴대폰 등에 대한 불법감청을 하지 않음은 물론 휴대폰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감청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구체적 근거

(1) 휴대폰 감청장비 폐기

- 국정원은 2001. 12. 29.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시행(2002. 3. 30.)을 앞두고 2002. 3. 28. R2 및 CAS 등 폐기 결정

- 2002. 4. 10.~4. 12. 인천 소재 동국제강 및 안산 소재 대일개발에서 R2 및 CAS 감청장비 등을 전량 폐기
 - 폐기 관련 사진 및 영수증, 폐기업체 관계자들 및 폐기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
 - 국정원 압수수색 시 동행한 전문가들도 수색에 참여토록 하였으나 남아 있는 휴대폰 감청장비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음

(2) 압수된 「감청조직 통합방안」(2004. 7.경 작성) 등 검토 보고서 분석

- 위 보고서 내용은
 - 유선전화 사용량이 저조하고 중요 내용은 휴대폰을 이용하므로 합법적 휴대폰 통화 감청은 필요
 - 1차적으로, 감청장비를 제작하여 합법적 휴대폰 통화 감청하는 방안 검토
- 라는 요지로서, 현재는 감청장비 및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향후 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 위 보고서 작성일 및 내용에 비추어 위 보고서 작성 당시인 2004. 7.까지는 휴대폰 감청은 확실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정원 및 전화국 직원 등에 대한 수사결과 현재까지 휴대폰 감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위 보고서는 실무선에서 검토한 내용으로서, 감청장비를 개발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는 취지로 작성된 것임

(3) 국정원의 감청조직 개편

- 국정원은 2003년 이후 감청부서의 인원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합법감청에 소요되는 필수요원만 근무토록 함
- 원장, 차장에게 보내는 통신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던 종합 처리과를 폐지

(4) 통신사업자의 법적 절차 준수

- 2002. 3.경부터 시행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업자의 확인의무 및 이에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이 신설되는 등 KT에서 감청협조 절차를 엄격히 준수
- KT가 2002. 5. 민영화되면서 노조의 감시가 강화되는 등으로 국정원에서 더 이상 KT로부터 불법적인 협조를 받기가 곤란하게 됨

다. 전직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녹음테이프

□ 녹음테이프 입수 경위 및 내용

- 2005. 9. 9. 박○○ 전 수집과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감청한 녹음테이프 1개 압수
- 녹음테이프에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문○○ 전 중앙일보 기자 간의 '언론대책 문건' 관련 통화내용이 담겨 있음

□ 녹음 경위

- 1999. 10. 25. 정형근 의원의 언론대책 문건 폭로 후 천용택 국정 원장이 이종찬 전 원장에게 중앙일보 문○○ 기자가 중국에서 이종찬 사무실에 팩스로 보낸 문건임을 알려주며 확인 및 대처토록 요청
- 그후 롯데호텔 안가에서 이종찬 전 원장, 천용택 원장, 엄익준 차장 등이 만나 대책을 논의한 직후, 이종찬 전 원장과 문○○ 기자가 전화통화를 함
- 당시 8국장 등 감청담당 실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국정원에서 위 통화를 불법감청한 사실이 확인됨

□ 위 테이프 소지 경위 및 사법처리 문제

- 박○○ 수집과장은 테이프 소지 경위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 한편, 위 통신감청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확인 곤란

IV. 不法 盜・監聽資料 流出 및 公開 關聯 事件

1. 도청테이프 등 반출·유포

가. 도청테이프 반출

□ 반출 동기

- 공운영은 1차 미림팀이 해체되면서 서기관급 미림팀장에서 사무관 보직으로 강등된 적이 있어 인사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2차 미림팀장으로 활동하면서도 이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던 중,
- 1996. 8.경 오정소 차장에게 부서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살길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에 도청자료를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반출 결심함

□ 반출 방법 및 수량

- 1996. 8.경부터 직원들 몰래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빼내 안가의 침대 밑에 쇼핑백을 두고 모아두었다가, 1997. 12. 말경 승용차를 이용하여 집으로 옮겨 놓았고,
- 압수된 녹음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 13권 외에 추가로 반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압수된 녹음테이프에는 당시 반출한 테이프뿐만 아니라 미림팀 활동 중단이후 망원들이 스스로 녹음한 테이프도 포함되어 있음

나. 삼성 상대 금품요구

□ 박인희에게 도청자료 전달 경위

- 공운영은 1999. 3.경 국정원에서 직권 면직된 이후,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통신관련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개업 초기 2개 월간 시설·인건비를 포함하여 6,000여만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 국정원 퇴직 직원 임○○로부터 재미교포 박인희가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교분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삼성그룹 관련 도청테이프 및 녹취보고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 임○○을 통하여 박인희에게 삼성측 고위 임직원과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한 후 궁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자 당시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박인희와 함께 도청 자료를 이용하여 삼성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고,

- 1999. 9. 하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프레지던트 호텔 인근 음식점에서 박인회에게 자신이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비밀 정보 수집 조직의 팀장이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테이프 1개, 녹취보고서 3건을 전달함
- 박인회는 공운영으로부터 프레지던트호텔 부근 음식점에서 도청테이프 1개와 녹취보고서 3건을 받은 후,
 - 인근 복사점에서 녹취문건 3세트(녹취보고서 3건이 1세트)를 복사하고, 상도동 집에서 도청테이프 2개를 복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CD 2개 및 녹취보고서 2세트를 추가 복사
 - 원본 도청테이프, 녹취보고서는 공운영에게 반납하고, 복사한 도청테이프(2개), 녹취보고서(5세트) 및 새로 제작한 CD(2개) 중,
 - ▶ 녹취보고서 3세트는 박지원, 삼성 김○○ 이사, 이상호 기자에게 1세트씩 전달하였고, 도청테이프 1개는 위 김○○에게 전달하였으며,
 - ▶ 테이프 1개는 이상호 기자에게 녹취보고서와 함께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은 후 미국에서 보관하다가 검찰에 제출하였고, 녹취보고서 1세트는 상도동 본가에서 압수되었으며, CD 1개는 검찰에 제출하였고, 나머지 CD 1개와 녹취보고서 1세트는 미국의 씨티은행 박인회 개인금고에 보관함

□ 삼성 상대 공갈 미수

- 박인회가 1999. 9. 하순경 삼성그룹 본관 이학수 구조조정 본부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공운영으로부터 받은 녹취보고서 3건을 제시하면서 녹취보고서의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 후 위 도청 녹음테이프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 5억원을 요구하고,
- 이후 김○○ 이사를 통해 5억원이 여의치 않으면 건설공사를 하도록 하여 달라고 독촉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 하려고 하였으나 이학수 본부장이 금원을 제공하지 않고 국가정보원에 신고함에 따라 미수에 그침
 - ※ 박인회는 이학수 본부장에게 녹취보고서를 제시하자 이학수 본부장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여기 같은 게 또 있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
 - ※ 이학수 본부장은 박인회가 온다는 말을 듣고 사전에 김○○ 이사에게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요구할 것 같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요구금액을 낮추기 위해 박인회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전화를 하여 한 말 같다고 진술

다. 도청테이프 등 회수·폐기

□ 첨보 입수

- 1999. 11. 경 “전직 임○○이 미림팀 테이프를 가지고 복직을 위해 박지원과 접촉하고, 삼성에도 공갈을 치고 있다”는 첨보를 입수하고, 엄익준 차장이 김은성 대공정책실장을 통해 회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천용택 원장이 이○○ 감찰실장에게 회수를 지시함
※ 엄익준 차장 사망으로 엄차장의 구체적인 첨보 입수 경로는 확인이 곤란하나, 박지원 전장관은 임○○이 복직부탁을 한 직후 천용택 원장에게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첨보내용도 임○○이 도청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박지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박지원의 신고로 첨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임

□ 회수

- 1999. 11. 하순경 이○○ 감찰실장은 유출혐의자로 공운영을 지목하고, 전 미림팀원들을 통해 공운영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유출된 도청테이프의 회수를 시도하여,
 - 1999. 12. 4. 경 공운영으로부터 자진 반납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보안과장이 공운영의 사무실에서 황색테이프로 밀봉된 라면박스보다 약간 큰 상자 2개를 전달받았고,

- 감찰실장은 보안과장으로부터 회수 당시 공운영이 “천용택 원장 것도 있으니 감찰실에서 풀어보지 말고 원장한테 직접 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회수해온 상자를 밀봉한 상태로 천용택 원장실로 전달함
 - 천용택 원장실로 전달된 2개의 상자 중 1개에는 도청테이프 261개가 들어있고, 다른 상자에는 천용택 원장 관련 도청테이프 2개 및 서신이 들어있는 밀봉된 봉투 1개와 녹취보고서 2,300여쪽 분량이 들어있었는데,
 - 천용택 원장은 회수 당일 본인과 관련된 도청테이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테이프를 들어 보고 즉시 파기하였음
 - 결국, 국정원이 회수한 도청테이프는 정상적으로 폐기된 261개와 천용택 원장이 회수한 당일 개인적으로 폐기한 2개를 합하여 총 263개임이 확인됨
- ※ 국정원은 “실장님 부임이후 주요성과사항 (2000. 4.)”라는 내부 문건에 “99. 12. 녹음테이프 261개 · 보고서 2,300여매 등 자료 회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261개를 회수하였다고 발표
- 한편, 공운영이 국정원에 반납한 도청테이프 263개는 수사 결과 도청테이프 원본이 아니라 각 복사본인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 공운영은 1998. 11.경부터 약 2개월간 분당 자택에서 카세트 녹음기를 이용하여 원본 274개중 녹음상태가 불량한 11개를 제외하고 263개를 복사하고, 복사기를 대여하여 녹취보고서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복사본을 반납한 것으로,
- 검찰에 압수된 274개의 도청테이프 표면에는 도청 일시 · 장소 · 대상자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국정원에 반납한 복사본에는 일련번호만 기재되어 있었고, 압수된 테이프 표면에 미림팀원 장○, 박○○ 필적의 글씨가 기재되어 있는 등 압수된 테이프가 원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국정원은 당시 테이프 회수가 급선무였는데 공운영이 자진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테이프 전부를 반납한다고 하였고, 회수한 테이프를 주로 보관했던 천용택 원장이 원본인지 여부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아 원본으로 인식한 것임

□ 보관

- 천용택 원장은 공운영으로부터 회수한 상자 2개를 원장실에서 보관하다가 2~3일 후 녹음테이프가 들어있는 상자를 이○○ 감찰실장에게 보내며 테이프 내용 녹취를 지시하였고, 녹취지시 후 5~6일 동안 감찰실 직원들이 녹취록을 일부 작성한 후, 녹취록과 테이프를 원장 공관으로 전달하여 테이프는 이후 공관에서 보관하였고, 녹취보고서는 원장실에서 계속 보관함

□ 폐기

- 1999. 12. 하순경 천용택 원장은 퇴임직전에 이○○ 감찰실장에게 테이프와 녹취보고서의 폐기지시를 하면서 테이프와 녹취보고서가 들어 있는 상자 2개를 내려 보냈고,
 - 감찰실장은 보안과장에게 원장의 폐기지시를 전달하며 테이프가 들어있는 상자를 일단 보관하도록 지시하여 보안팀 캐비넷에 보관시키고, 2~3일 동안 녹취보고서를 검토한 후 보안과장에게 지시하여 녹취보고서도 보관케 하던 중
 - 1999. 12. 26. 임동원 원장 취임 후 임동원 원장이 감찰실장에게 도청테이프 보관 여부에 대하여 묻자 감찰실장은 “천 원장님 퇴임하는 날 모두 소각해 버렸다”고 허위보고를 하고는 곧 바로 폐기하기로 결심함
- 1999. 12. 30.경 감찰실장은 보안과장에게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가져오도록 하고, 공운영이 작성하여 상자에 넣어 둔 목록표를 이용하여 테이프 개수(261개)와 녹취보고서 분량을 확인한 후 보안팀장에게 직접 폐기하라고 지시하였고,
 - 보안팀장은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청사 내 소각장으로 운반한 후 테이프와 녹취보고서의 수량을 재차 확인하면서 전부 소각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안과장과 감찰실장에게 보고하였음

라. MBC 이상호 기자 상대 도청테이프 유출

□ 유출 동기

- 박인회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주미대사로 거론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홍석현이 임명되지 못하게 하기위해 테이프와 문건을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
※ 박인회는 ‘X파일’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실로 생각하고, 홍석현 같은 사람은 주미대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
- 박인회는 이상호 기자로부터 취재 사례비로 미국에서 1,000달러를 받고, 10,000달러 제공 제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유출 경과

- 2004. 12. 5.경 공덕동 불교방송 부근 커피숍에서 박인회가 MBC 이상호 기자에게 재벌 그룹의 비리를 방송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운영으로부터 받은 녹취보고서 3건의 복사본을 제공하고,
- 2004. 12. 29.경 이상호 기자가 도청테이프를 받기 위해 미국 뉴저지에 있는 박인회의 집에 찾아갔으나 미국에 도청테이프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박인회와 이 기자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여,